

제 882 호  
1981.12.31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
편집 : 공 보 관 이 총 우  
전화 72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 
전화 72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◎ 조 | 제    | 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쪽 |
|     | 1572 | 호 :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      | 3 |
|     | 1573 | 호 :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    | 4 |
|     | 1574 | 호 : 서울특별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 | 4 |
|     | 1575 | 호 :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              | 5 |
|     | 1576 | 호 : 서울특별시에산편성조례                | 6 |
|     | 1577 | 호 : 서울특별시남산야외음악당설치조례 폐지조례      | 8 |
|     | 1578 | 호 : 서울특별시시립남산야외음악당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 | 8 |
|     | 1579 | 호 :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/조례 폐지조례       | 8 |
|     | 1580 | 호 : 서울특별시대간침작전진호대책위원회조례 폐지조례   | 8 |
|     | 1581 | 호 : 서울특별시혼분식실천강화협의회조례 폐지조례     | 9 |
|     | 1582 | 호 : 서울특별시관광휴게소설치조례 폐지조례        | 9 |
|     | 1583 | 호 :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              | 9 |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# 서울특별시

2262

|            |   |    |
|------------|---|----|
| 제 1584 호 : | 서울특별시원호대상자의주택및농지취득에대한시세<br>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..... | 10 |
| 제 1585 호 : | 서울특별시세입징수로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.....                     | 11 |
| 제 1586 호 : | 서울특별시산업체부설학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<br>관한조례중개정조례 .....       | 11 |
| 제 1587 호 : | 서울특별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<br>조례중개정조례 .....        | 11 |
| 제 1588 호 : |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조례중<br>개정조례 .....           | 12 |
| 제 1589 호 : |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물위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<br>개정조례 .....          | 12 |
| 제 1590 호 : |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 .....                       | 13 |

조 제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  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2 호

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  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 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, 우등성장학금 및 특기성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 조 (장학생의 자격) ①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·여 새마을지도자 (구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)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)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다만,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경력 1년이상 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.

1. 유공자는 현직 부부새마을지도자 또는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 중 새마을사업시행중 공사상을 입은자

2. 우등생은 풀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학학년 정원의 100분의 5) 이내 에 해당하는 자

3. 특기생은 풀행이 단정하고 기 능, 재능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

② 제 1 호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.

제 4 조, 제 5 조 및 제 9 조제 2 항중 "출장소장"을 삭제한다.

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6 조 (장학생의 정원) 장학금은 구당 새마을지도자수의 3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천수익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| <p>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3 호</p> <p>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<br/>징수조례중개정조례</p> <p>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<br/>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 10 조중 " 30 일"을 " 10 일"로<br/>한다.</p> <p>제 1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12 조 (권한위임) 이 조례의 부담<br/>금에 관한 토지등의 가액결정과<br/>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부<br/>담금 부과대상구역을 관할하는 구<br/>청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부과대<br/>상구역이 2 개이상의 구에 걸쳐<br/>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| <p>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<br/>특별시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<br/>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<br/>다.</p> <p>1981년 12월 31 일</p> <p>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</p> <p>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4 호</p> <p>서울특별시유기장영업허가<br/>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</p> <p>서울특별시 유기장영업허가수수<br/>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(별표 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|   |  |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|--|---|--|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<p>&lt;별 표&gt;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액</p>  |  |   |  |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</th> <th>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당구장, 베이비볼프장, 서플보오드장,<br/>투환장, 회전비행, 어린이승마장,<br/>모형차유기장, 회전의자, 실내사격장,<br/>전자유기</td> <td>5,000 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 | 종  | 별 | 당구장, 베이비볼프장, 서플보오드장,<br>투환장, 회전비행, 어린이승마장,<br>모형차유기장, 회전의자, 실내사격장,<br>전자유기 | 5,000 원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신규허가및소재지<br/>변경허가수수료액</th> <th>허가사항변경허가수수료액<br/>(소재지변경허가제외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,000 원</td> <td>2,000 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신규허가및소재지<br>변경허가수수료액 | 허가사항변경허가수수료액<br>(소재지변경허가제외) | 5,000 원 | 2,000 원 |
| 종   | 별  |   |  |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당구장, 베이비볼프장, 서플보오드장,<br>투환장, 회전비행, 어린이승마장,<br>모형차유기장, 회전의자, 실내사격장,<br>전자유기  | 5,000 원  |   |  |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신규허가및소재지<br>변경허가수수료액  | 허가사항변경허가수수료액<br>(소재지변경허가제외)  |   |  |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5,000 원   | 2,000 원  |   |  |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 |  |   |  |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지명위원회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  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團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5 호

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

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조례를 다음  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측량법  
제 35조의 4 제 4 항의 규정에 의  
하여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(이하  
"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 및  
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 
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 
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  
장은 내무국장이 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 
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내무국 문화과장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 
풍부한 자중 5인이상 7인 이내
3.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  
고 인정하는 자

④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

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서울  
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 
적임하게 할 수 있다.

⑤간사는 내무국 행정과장이 되며  
서기는 행정과 행정제장이 된다.

⑥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 
연구,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 
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 
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제 3 조 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  
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 
있다.

제 4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  
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
2. 서울특별시내 일원의 지명에  
관한 조사 및 자료집과 분석
3.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

제 5 조 (지명의 조사) ①제 4 조의  
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서울  
특별시내 일원의 부정 및 행정지  
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

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  
할 때에는 지명의 생상, 유래, 변천과  
정을 포함하여 지명중첩, 합호칭되고 있는  
지명이나 명칭 오류(제기 또는 변경으로  
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)  
또는 국가 기본도상 표시오류  
지명을 조사한다.

③서울특별시의 경기도의 시·도  
경계간 개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 
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 
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중앙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.

제 6 조 (의견청취)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제 7 조 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, 서울특별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 (회의록) 위원회의 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- 1. 회의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- 3.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
- 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
- 5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9 조 (시행규칙)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
예산편성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6 호

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6 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예산편성, 심의, 확정에 관한 절차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예산편성 지침) 국무총리는 매전년도 8월 30일 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시달한다.

제 3 조 (예산안의 편성) ① 서울특별시 본청 각국장, 구청장 및 사업소장은 매전년도 9월 30일 까지

소관별 요구예산안을 예산편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일반회계, 특별계의 세입, 세출예산, 계속비, 명시 이월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다.

특히, 사업예산 편성의 경우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에 의거 가용제한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와 관련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1. 사업계획서
  - 가. 기본계획서
  - 나. 소요자금 및 년도별 재원조달계획
  - 다. 사업의 효과 분석
- 2. 사업별 우선 순위 책정

제 4 조 (예산안 제출등) ①시장은 제 3 조에 의한 예산안을 매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예산안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 5 조 (예산심의) ①국무총리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심의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제 1항의 예산심의 자문위원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.

제 6 조 (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)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승인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각호의 경비 들 전년도 예산내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이 경우, 국무총리 예산승인 이전까지의 예산집행을 사후 승인된 것으로 본다.

- 1. 법령,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운영
- 2. 법령, 조례에 의한 지출 의무의 이행
- 3.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

제 7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남산가외음악당설치조례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7 호

서울특별시 남산야외음악당설치  
조례 폐지조례

서울특별시 남산야외음악당 설치조  
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남산야외음악당 사용료징수조례폐지 조  
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8 호

서울특별시립 남산야외음악당사용료  
징수조례 폐지 조례

서울특별시립 야외음악당 사용료  
징수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도시공원위원회조례폐지 조례를 이에

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9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 
조례 폐지 조례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조례를  
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 
시 대간첩작전 원호대책위원회조례폐  
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0 호

서울특별시 대간첩작전 원호대책  
위원회 조례폐지 조례

서울특별시 대간첩작전 원호대책위  
원회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혼분식 실천강화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 
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1 호

서울특별시 혼·분식실천강화  
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

서울특별시 혼·분식 실천강화협회의  
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관광휴게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를 이  
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2 호

서울특별시 관광휴게소 설치  
조례 폐지 조례

서울특별시 관광휴게소 설치조례는  
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세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  
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3 호

서울특별시세조례중 개정 조례

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 
한다.

제 4 조중 "자동차등록사업소장"을  
"자동차관리사업소장"으로 한다.

제 7 조 제 1항중 "각구(출장소)에  
구(출장소)시세심의위원회"를  
"각구에 구시세심의위원회"로  
한다.

제 7 조 제 5 항 중 "제 1 부서장"을  
 "부서장"으로, "세무국장"을  
 "재무국장"으로 "시의 세무행정  
 과장, 과장과장, 세무조사과장 및  
 지적과장"을 "시의 세정과장, 세  
 무지도과장, 재정기획과장 및 지적  
 과장"으로, "총무국장(출장소장)"  
 을 "재무국장"으로, "구의 세무  
 1과장, 세무 2과장 및 출장소의  
 세무과장"을 "구의 세무 1과장,  
 세무 2과장"으로 한다.

제 7 조 제 1 항 본문 중 "구청장(출  
 장소장)"을 "구청장"으로 하고  
 제 1 호 가목 중 "3 급을류 이상의  
 공무원과 시행정자문위원"을 "5  
 급이상의 공무원과 시정책 자문위  
 원의 위원"으로 하며 제 2 호 가  
 목 중 "3 급을류 이상의 공무원과  
 구행정자문위원"을 "5 급이상의  
 공무원과 구정자문위원"으로 한다.

제 7 조 제 12 항 중 "구(출장소)"을  
 "구"로 한다.

제 7 조 제 17 항 중 "구청장(출장소  
 장)"을 "구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 10627 호  
 (1981년 11월 9일) 서울특별시  
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  
 일로부터 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 
 시 원호대상자의 주택및 농지취득에  
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  
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[인]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4 호

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 
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과세  
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 
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 
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중 "구청장, 출장소장"을  
 "구청장"으로 한다.

제 4 조 제 1 항 중 "구청장, 출장소장"  
 을 "구청장"으로 하고 제 2 항 중  
 "구청장, 출장소장"을 "구청장"  
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 
 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 
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[인]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5 호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단서 중 "세무행정과장"을 "세정과장"으로 한다.

제 5 조 중 "구, 출장소"를 "구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 10627 호 (1981년 11월 9일)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6 호

서울특별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

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중 "구청장(출장소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를 "구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587 호

서울특별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중 "관할구청장(출장소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"관할구청장"으로 한다.

13-12 제 882 호 시  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  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588 호

서울특별시 도시정비정돈에  
따른 시세과세 면제  
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시세과세 면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중 "구청장(출장소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을 "구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

보 1981.12.31  
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  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589 호

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 
위한 시세과세 면제 조례중  
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중 "구청장(출장소장)"을 "구청장"으로 한다.

제 3 조 제 1 항, 제 2 항 및 제 3 항 중 "구청장(출장소장)"을 "구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1년 12월 31일  
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590 호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심의회  
조례 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심의회 조례  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  
과 같이 한다.

①심의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  
인과 위원 약간정수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, 부위  
원장은 관재과장이 되며, 위원은  
예산담당관, 세전과장, 도시계획과장,

구퇴정리과장, 건설행정과장, 주택기  
획과장, 주택개발과장, 업무과장, 지  
수과장이 된다.

제 4 조 중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  
다.

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 
위원장의 감독상 그 직무를 대행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 10627 호

(1981년 11월 2일) 서울특별시 공  
정기규칙 관한 규정 제 10627 호령  
으로부터 적용한다.